

논문투고 규정

제정 2006년 8월 1일

개정 2018년 1월 10일

2023년 8월 1일

제 1 조 목적

이 규정은 국학연구원(이하 본 연구원)의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학술지 명칭

학술지의 국문명은 『선도문화』, 영문명은 <Journal of Korean Sundo Culture>라 표기한다.

제 3 조 발간 횟수 및 발행 시기

- ① 학술지는 매년 2월 27일, 8월 30일 총 2회 발간한다.
- ②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. 원고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(6월 30일, 12월 30일)으로 하나, 별도의 공지를 통해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투고 자격

- ① 원칙적으로 본 연구원의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. 단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아니어도 투고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투고자격이 있다.
- ③ 임원, 편집위원 투고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50%를 넘지 않는다.
- ④ 임원 및 편집위원 투고 시 관련자를 배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.

제 5 조 투고 내용

- ① 투고논문의 주제는 국학(國學)과 관련된 전 학문 계열의 관련 주제로 투고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,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.
- ② 논문 이외에도 시론, 서평, 자료소개 등 국학에 대한 글을 게재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작성을 의뢰한다.
- ③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형식과 작성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제 6 조 투고자의 책임과 의무

- ① 투고자는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투고자는 논문제출시 사전에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표절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투고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연구원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 7 조 원고분량

- ① 투고논문의 양은 200 자 원고지 150 매(각주 및 참고 문헌 목록 포함) 이내로 한다. 150 매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행 실비를 부담한다. 초과 비용은 최종 인쇄 후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.
- ② 국문요약과 영문요약은 200 자 원고지 10 매 이내로 작성한다.

제 8 조 저자표기

- ① 저자의 성명, 소속, 직위 등을 표기한다.
- ② 공동연구논문인 경우에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, 좌로부터 제 1 저자, 교신저자, 제 2 저자 순으로 기록한다.

제 9 조 심사 및 게재료

기본 심사료 및 게재료는 각 6 만원이며, 연구비 수혜논문은 30 만원이다.

제 10 조 제출파일

투고자는 논문투고시 개인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논문,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지, 연구윤리 서약서,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 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제척 및 회피

투고자가 본 연구원의 원장, 편집위원장 기타 임원과 혈연 등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,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에 반드시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경우 임원 중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.

제 12 조 재투고

논문심사에서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,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.

제 13 조 저작권

- ①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전부 본 연구원으로 이양된다.
- ② 저작권 양도 후 저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 양도동의서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6 년 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개정 규정은 2018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개정 규정은 2023 년 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